【 국내금융 뉴스 】

상반기 금융분쟁 조정신청, 보험이 대부분

□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보험관련 신청의 비중이 가장 높아 보험권의 민원 소송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2010년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2,94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감소했으며 이는 은행과 금융투자부문의 분쟁접수건 감소에 기인함.
o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 5,398건(41.7%),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순으로 나타남.
o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79.2%를 차지하여 지난해 상반기 비중인 70.5%보다 8.7% 상승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냄.

□ 특히, 금융회사의 소제기 중에는 손해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에서 다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

o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소송의 제기로 이어진 건은 전체의 4.2%인 545건이었으며 이중 금융회사 소제기가 507건이고 신청인 소제기는 38건으로 나타남.
o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507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은 457건으로 90.1%를 차지했으며 은행 30건(5.9%), 생명보험 18건(3.6%), 금융투자 2건(0.4%) 순으로 나타남.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임.

o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은 소송당사자의 시간·경제·정신적인 불편을 초래해 제지급금 지급 지연과 회피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금융회사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높음.
o 따라서 금감원은 소제기 급증회사, 민사조정신청 과다 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역별 소제기 상위회사와 소비자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2010년 8월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2010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등, 금감원 등, 8/11)